

## 84 (第18回-第4次)

주 관 국	사 무 명	근 거 법령	수임기관
전 설 국 (치수과)	하. 과오납된 부담금·점용료·사용료·변상금 기타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 거.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너.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더. 하천감시원의 임명, 하천법 및 하천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명령 러.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등 필요 한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및 서류 등의 검사 머. 하천의 사용금지·제한 및 이에 따른 공고 등 버. 원상회복의무 조치, 면제, 면제통보, 비용의 예치 및 당해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 서. 하천구역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 어.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이에 따르는 조치 저.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·사용 및 이에 따르는 조치 처. 폐천부지(국유지 제외) 등의 교환 및 양여 커. 허가수수료의 징수·감면 터.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페.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이에 따르는 처분 2. 하천국유화에 따른 조치(지목변경, 등기 말소의 촉탁, 관리청명 청첨기)	○ 동법 제59조 ○ 동법 제64조 ○ 동법 제65조 ○ 동법 제68조  ○ 동법 제69조  ○ 동법 제72조 ○ 동법 제73조  ○ 동법 제74조 ○ 동법 제75조 ○ 동법 제76조 ○ 동법 제77조 및 제78조 ○ 동법 제80조 ○ 동법 제81조  ○ 동법 제88조 ○ 동법 제3조	구 청 장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중 환경관리실(폐기물시설과)란을 다음과

## 같이 한다.

주 관 국(과)	사 무 명	비 고
환경 관리실 (폐기물 시설과)	○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○ 노원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○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○ 양천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○ 강남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	

<p><b>부 칙</b>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</b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항,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창업·발전을 지원·육성하고 아울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(이하 “지원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3조(지원시설의 설치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명칭·위치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.</p> <p>제4조(관리·운영) 시장은 지원시설을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시장은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·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·운영 능력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산업지원센터</li> <li>2.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</li> <li>3. 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</li> <li>4. 창동중소기업제품전시장</li> <li>5. 서울애니메이션센터</li> <li>6. 서울패션디자인센터</li> </ol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1조,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6조(사용허가 등) ①지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(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)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제7조(운영위원회) ①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지원시설 관리·운영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지원시설의 사용허가·취소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기타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정한다.</p> <p>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<b>부 칙</b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지원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하여 관리·운영중인 중소기업지원 관련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보며, 그 관리·운영의 위탁기간 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·운영이 위탁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3조(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증인 자로 본다.</p> <p>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서울특별시공공시</p>
--	---